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수 당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지방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9)

「의료법」,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제1급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개선(안 별표9)

재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비상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수당지급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24.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수당

별표 9의 기술분야의 번호 2.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시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
「약사법」 제3조 및 제4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 및 보건연구직렬
공무원으로 한정하되 보건
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의 번호 2.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2) 중 “직렬별
지급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의 번호 13.의
지급대상란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다목을 삭제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등 비상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생 략) ② 삭 제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 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 ~ 11. (생 략) <u>12. 별표 9 제2호다목의 수당과</u> <u>같은 표 제1호의 수당, 같은</u> <u>표 제2호가목·나목의 수당</u> <u>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수당</u> ④ ~ ⑫ (생 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u> <u>제2호다목의 수당</u> ④ ~ ⑫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